

사회협력 추진위원회 규정

제정 2020. 10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가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사회협력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협력추진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상지대학교 사회협력 계획의 점검 및 개선사항
2. 상지대학교 사회협력 체계 제안
3. 상지대학교 사회협력모델 구축
4. 상지대학교 사회협력 혁신을 위한 제반사업 연구
5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협력부총장으로 한다.

② 사회협력부총장, 대학원장, 기획평가처장, 대외협력처장, 학생행복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제6조(보고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간사의 서명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,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상지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교직원 및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행정 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교직원 및 관계 부서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에서 주관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9조(경비지급)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676, 2020. 10. 22.)

이 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